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여성가족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청소년증 대리 신청 자격을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고, 청소년증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사진의 규격을 타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 등)과 통일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청소년증 대리 신청 자격을 “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”까지 확대(제2조제3항)
- 나. 청소년증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사진의 규격을 3cm x 4cm에서 3.5cm x 4.5cm로 변경(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수렴 예정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3항 중 “있는 사람이”를 “있는 사람과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”로 한다.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청소년증의 발급신청) ① ~ ② (생 략) ③ 제1항 또는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<u>있는 사람이</u> 대리할 수 있다.	제2조(청소년증의 발급신청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 또는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<u>있는 사람과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</u> 대리할 수 있다.

청소년증 (재)발급신청서

※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 리 기 간	14일
신청인 (본인)	성명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
	[] 초·중·고 재학 중 [] 초·중·고 재학하지 않음 [] 고등학교 졸업		
신청내용	신청구분	[] 신규 [] 재발급([] 분실 [] 훼손 [] 기타)	
	수령방법	[] 방문 [] 등기우편	
	등기우편 수령 주소	(우)	
교통카드 기능	[] 신청: 종류()		사진 3.5cm×4.5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 영한 것)
	[] 신청하지 않음		
대리 신청인	성명	관계	주민등록번호
	주소		
	전화번호		휴대전화번호

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며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·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(재)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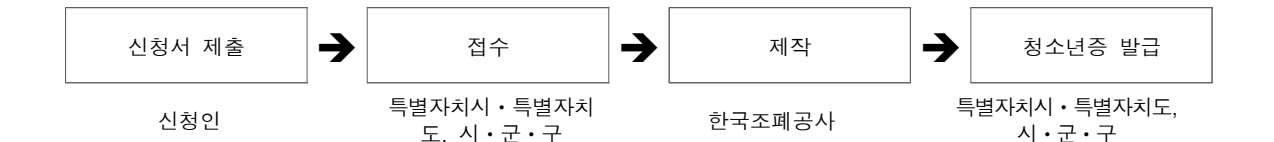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 뒤쪽 참조

수수료
없음

처리절차



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

사 진 (3.5cm×4.5cm)	성 명				
	주민등록번호				
	주 소				
간					
인					
발급신청일자		발급번호		유효기간	

위 사람은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

유의사항

- ※ 발급 시 유의사항
- 이 확인서는 전산조작으로 출력하여 발급하거나 본 서식에 사진을 붙인 후 발급할 수 있으며, 반드시 기관장의 관인으로 간인하고, 사진을 포함한 인적사항·발급번호·유효기간은 투명스티커를 덧붙여야 합니다.
- ※ 이용자 유의사항
- 이 확인서는 청소년증 발급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발급신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청소년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활용하는 증명서이며, 청소년증 발급통보를 받으면 청소년증을 별도로 수령해야 합니다.
 -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까지이며 청소년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.
 - 이 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증 발급기관(☎ -)으로 문의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